

직접처리민원사무의 범위와 그 처리기간(제24조제1항 관련)

민원사무의 종류	근거 법령	처리기간
1. 삭제 <2016. 7. 28.>		
2. 현물출자완료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제3항	즉시
3.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제8조	7일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즉시
5. 근무처 변경·추가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즉시
6. 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즉시
7. 체류자격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제1항	즉시
8. 체류기간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즉시
9.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즉시
10.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즉시
11.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5조	즉시
12. 체류지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즉시
13.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즉시
14. 조세감면 신청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	즉시
15. 현금지원 신청 접수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즉시
16. 외국 운전면허증 교환발급	「도로교통법」 제84조, 제86조, 제87조, 제95조	즉시
17. 조세감면 사전확인 신청 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7항	즉시